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2. 18.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1월 19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20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8. 12. 4)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 요 출)

가. 제안이유

-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학계,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명칭변경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기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 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

-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의 보고시기 조정(안 제14조)
-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관리(안 제18조제4항)
- 위원 해촉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안 제20조제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준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윤)

- 서울시에서 마련한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내지”를 “~부터~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인”을 “명”으로 “기타”를 “그밖에”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골자

- 안 제17조제1항 중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둘 수 있다”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8조제4항 중 “자원봉사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한다.
- 안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한다.

5. 審査結課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85 호
----------	--------------

제안연월일 : 2008. 12. 4

제 안 자 : 윤동규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7조제1항 중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들 수 있다”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들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8조제4항 중 “자원봉사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한다.
- 안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7조제1항 중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들 수 있다”를 “당해 지역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들 수 있다”로 한다.
- 안 제18조제4항 중 “자원봉사로 관리한다”를 “자원봉사자 기준에 준한다”로 한다.
- 안 제20조제1항 중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할 경우”로 한다.

부 칙

< 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85 호
----------	---------

제출연월일 : 2008.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동사무소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하여 주민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새이름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학계·시민·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명칭변경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지침이 통보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기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

- 종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내용변경

- 주민자치센터 또는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
- 주민자치센터의 연간운영 계획의 보고시기 조정(제14조)
- 주민자치위원이 강사로 활동했을 때 자원봉사자로 관리(제18조제4항)
- 위원해촉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 (제20조제1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관련 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조직발전팀 - 2445 (2007. 8. 29)호
 -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
 - 서울시 행정과 - 16563 (2008. 9. 1)호
 - 주민자치센터 명칭변경 추진 지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 2008. 10. 22 ~ 11. 11 (20일간) 결과 : 별첨
- (3) 규제심사 : 심사필.

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p>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p>	<p>제20조제3항(신설)관련 - 동장의 자치위원회 해산권은 자치위원들을 압박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면 안됨</p> <p>-통합동의 자치위원 정수는 자연 감소시까지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정수를 확대 운영해 주기를 희망함.</p>	<p>○ 제20조제3항 신설 ⇒ 제20조제1항 단서로 변경</p> <p>- 위원해촉시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p> <p>○ 미반영 - 동 주민센터 설치조례 부칙제3조(경과조치 잔여임기 보장으로 반영하여 운영중임.</p>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를 “자치회관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센터는”을 “자치회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센터가”를 “자치회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중 “자치센터”를 각각 “자치회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치센터와”를 “자치회관과”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까지”를 “4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자치센터”를 “그 밖에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2인 이내”를 “2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5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로 관리한다.

제19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 “기타”를 “그밖에”로, “잔여임기로 한다.”를 “남은 임기로 한

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1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21조제5항 중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8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에 두는 <u>주민자치센터</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주민자치센터</u>”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략) <p>제3조 (원칙) <u>주민자치센터</u>(이하 “<u>자치센터</u>”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u>위원회</u>”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주민자치센터</u></p> <p>제4조 (설치 등) ① <u>자치센터</u>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② <u>자치센터</u>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 (목적) ----- 같은 법 시행령 ----- ----- ----- 자치회관----- -----</p> <p>제2조 (정의)----- ----- 1. “<u>자치회관</u>”이란----- -----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 (원칙) <u>자치회관</u>과----- ----- ----- 1 ~ 5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자치회관</u></p> <p>제4조 (설치등) ① <u>자치회관</u>은----- ----- 해당----- 자치회관----- ----- ② <u>자치회관의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5조 (기능) ① <u>자치센터</u>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② 제1항의 기능 중 <u>당해</u>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5조 (기능) ① <u>자치회관</u>은-----</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당</u> -----</p> <p>-----</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u>자치센터</u>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u>당해</u>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 <u>자치회관이</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자치회관</u>-----</p> <p><u>해당</u>-----</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 (운영) ① <u>자치센터</u>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u>자치센터운영</u>”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p> <p>② 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u>자치센터</u>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당해</u>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u>자치센터</u>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u>자치센터운영</u>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7조 (운영) ① <u>자치회관</u>-----</p> <p>----- “<u>자치회관</u>” -----</p> <p>-----</p> <p>② -----</p> <p>-----</p> <p><u>자치회관</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u>해당</u>----- <u>자치회관</u>-----</p> <p>-----</p> <p>----- <u>자치회관</u> -----</p> <p>-----</p>

현행	개정안
<p>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 해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u>자치센터</u>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⑥----- -----자치 회관-----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1조 (이용 등)①주민은 <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u>자치센터</u>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 및 ④ (생략)</p> <p>⑤동장은 <u>자치센터</u>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p>제11조 (이용등)①-----자치회관----- ----- ②자치회관----- ----- ③ 및 ④ (현행과 같음) ⑤-----자치회관----- ----- -----</p>
<p>제12조 (주민참여)①구청장과 동장은 <u>자치센터</u>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장구하여야 한다.</p> <p>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u>자치센터</u>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제12조 (주민참여)①-----자치회관----- ----- ②----- -----자치회관----- ----- ③(현행과 같음)</p>
<p>제14조 (보고)①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u>자치센터</u>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①----- 4개월 전까지----- ----- ②-----자치회관----- ----- 해당----- -----</p>
<p>제15조(설치) <u>자치센터</u>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p>	<p>제15조 (설치) 자치회관-----</p>

현행	개정안
<p>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를 둔다.</p>	----- -----
<p>제16조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 <u>자치센터</u>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2 ~ 4 (생략)</p> <p>5. <u>기타 자치센터</u>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및 ③ (생략)</p>	<p>제16조 (기능) ①-----</p> <p>-----</p> <p>1. <u>자치회관</u>-----</p> <p>-----</p> <p>2 ~ 4 (현행과 같음)</p> <p>5. <u>그밖에 자치회관</u>-----</p> <p>② 및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 (구성 등)①위원은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15인이상 25인이내</u>로 구성하 되, <u>별도로 2인 이내</u>의 고문과 당해 지역선거구 에서 선출된 구의회위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들 수 있다.</p> <p>②동장은 <u>당해</u>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u>자치센터</u>의 운 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p> <p>1. <u>당해</u> 동에 소재하는 기관장 , 통장대표 및 유관단체장, 교육 · 언론 · 문화 · 예술 기타 시 민 ·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p> <p>2 (생략)</p> <p>③ ~ ④ (생략)</p> <p>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u>당해</u> 동의 관할구 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p> <p>⑥ 및 ⑦ (생략)</p>	<p>제17조 (구성 등) ①-----</p> <p>각 1명-----15명 이상 25명 이내-----</p> <p>----- 2명 이내-----</p> <p>-----</p> <p>② -----<u>해당</u>-----</p> <p>-----</p> <p>-----<u>자치회관</u>-----</p> <p>-----</p> <p>1. <u>해당</u>-----</p> <p>-----</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생략)</p> <p>⑤-----</p> <p>-----<u>해당</u>-----</p> <p>-----</p> <p>⑥ 및 ⑦ (현행과 같음)</p>
<p>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및 ② (생략)</p> <p>③고문은 <u>자치센터</u>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p>	<p>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 및 ② (현행과 같음)</p> <p>③-----<u>자치회관</u>-----</p>

현행	개정안
<p>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p>-----</p> <p><u>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위원이 강사로 활동하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로 관리한다.</u></p> <p>⑤-----<u>자치회관</u>-----</p> <p><u>자치회관</u>-----</p> <p>-----</p>
<p>제19조 (간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u>간사 1인</u>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9조 (간사)①-----</p> <p><u>간사 1명</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해촉)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및 3 (생략) 4. <u>자치센터</u>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u>기타</u>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p>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여임기</u>로 한다.</p>	<p>제20조(해촉)①-----</p> <p>-----<u>각 호의 어느 하나에</u>-----</p> <p>-----</p> <p>-----<u>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6조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해당</u>----- 2 및 3 (현행과 같음) 4. <u>자치회관</u>----- 5. <u>그밖에</u>----- <p>-----</p> <p>② -----</p> <p>-----<u>남은 임기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1조 (회의)① ~ ④ (생략)</p> <p>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1조 (회의)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u>자치회관</u>-----</p> <p>-----</p>